

제2735호
2020. 5. 13.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 전 산 과 장 김 건 태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0-364호 :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2

● 고 시

제2020-55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6

제2020-56호 : 도로구간 변경고시 7

● 공 고

제2020-349호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9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364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참여형 보건지소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꾸준히 성장한 지역주민 역량강화 와 확대된 주민참여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조례안을 구체화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보건지소 운영 협의회’는 삭제, 주민건강위원회’삽입
- 보건지소 설치 (안 제3조)
 - 제 ②항 별표 1에 다산보건지소를 추가, 관할 구역을 확장
- 업무 (안 제4조)
 - 제①항 3의 ‘자조모임 등 주민참여형 보건사업 지원’의 내용을 구체화
 - 제①항 4의 보건지소 운영 협의회’를 삭제, ‘주민건강위원회’를 삽입
 - 제②항에 제3조 ②항의 관할구역 구체화 외 전동 확대 운영을 삽입
- 운영 (안 제6조)
 - 제③항의 ‘건강동아리’를 ‘건강소모임’으로 변경

- 주민건강위원회(안 제7조)
 - 제①항의 위원에 대한 위촉을 보건소장으로 함
- 제8조(살비보상 등), 제9조(표창)을 신설
- 제3장 보건지소운영협의회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시민건강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9길 16(무학동), 문의전화 : 3396-6964, FAX: 3396-8896, 메일 : ssol0409@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2015.10.07 조례 제1275호

(개정) 2020. . . 조례 제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참여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보건지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지소 주민건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보건지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관리
2.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기관으로서의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3.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보건행정 구현
4. 보건지소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 참여

5. 지역 내 건강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

제2장 보건지소

제3조(설치 등) ① 지역보건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업무) ① 보건지소는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 예방·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할지역 미충족 보건의료 수요 발굴 및 건강 환경 조성
- 2. 지역주민들의 건강지표 향상과 다양한 참여방식의 보건교육 등 제공
- 3. 보건지소에서 정한 지도자 교육을 이수하고 지역사회 주민참여 건강증진 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건강지도자 양성과 활동 지원
- 4. 기타 주민건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② 보건지소가 수행하는 사업 중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제3조 2항의 관할구역 외 관내 전동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보건지소장) ① 보건지소에는 지소장 1인을 두어야 하며, 지소장은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되 보건소 직원이 겸임 할 수 있다.

②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운영) ① 사업계획 및 지역보건정책 수립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소별로 주민건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지소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자조모임인 건강소모임 등을 적극 발굴하며, 지역사회 단체와 유관 기관 등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건지소 운영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주민건강위원회) ① 주민건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체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의 3분의 1이상은 일반 거주민으로 구성하고 보건소장이 위촉한다.
- ② 보건소장은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주민건강위원회는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 사업운영,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결정한다.
- ④ 위원장은 주민대표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주민건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팀장이 된다.
- ⑥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살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표 창) 구청장은 주민참여 건강증진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주민,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다산보건지소	서울 중구 동호로15길 50	다산·필·장충·을지로동
약수보건지소	서울시 중구 다산로 92	약수·청구·동화동
황학보건지소	서울시 중구 난계로 11길52	황학·광희·신당·신당5동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55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4	2020. 5. 13.	세종대로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 5. 20	조선 제4대왕인 세종의 묘호 인용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시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56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간 변경·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고시일 : 2020. 5. 13.(수)
2. 고시방법 : 구보, 구 홈페이지, 구·동 주민센터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 붙임 조서 및 도면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관리과 도로명주소사업팀(02-3396-59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구간 변경조서 및 도면 1부.

□ 도로구간 변경 조서

위계	도로명	도로명 부여 사유	종속 구분	도로구간					기초간격 (m)	기초번호	
				구분	기점	종점	길이	폭		시작	끝
길	세종대로2가길	세종대로를 중심으로 일련 번호 부여	주도로	변경 전	남대문로5가 84-31	남창동 61-8	239	7	10	1	44
				변경 후	남대문로5가 43-4	남창동 61-8	125	7	10	23	48
			1차 종속 도로	변경 전	남대문로5가 84-31	남대문로5가 261-1	51	4	10	14-1	14-10
				변경 후	종속구간 폐지						
길	세종대로2나길	세종대로를 중심으로 일련 번호 부여	주도로	변경 전	남대문로5가 84-31	남창동 51-11	236	6	10	1	42
				변경 후	남대문로5가 84-31	남창동 51-11	144	6	10	19	46
			1차 종속 도로	변경 전	남대문로5가 84-31	남대문로5가 12-29	24	3	10	9-1	9-6
				변경 후	종속구간 폐지						
길	세종대로2길	세종대로를 중심으로 일련 번호 부여	1차 종속 도로	변경 전	남대문로5가 261-1	남대문로5가 261-1	71	4	10	21-1	21-14
				변경 후	종속구간 폐지						

□ 도로구간 중심선 도면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349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중 구 청 장

1. **공고의 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0.05.13 ~ 2020.05.28

3. 공 고 대 상

- 자동차등록번호 : 95소59** 외 5건
- 소 유 자 명 : 박*준외 5건
- 운행정지 명령일자 : 2020.04.01.-2020.04.30.
- 운행정지 사유 : 소유자 요청에 의거

4.공 고 내 용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중구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02-3396-62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정지 자동차 현황

연번	운행정지 상태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명	소유자등록번호	사용본거지주소
1	등록	95소59**	KMFZCY7JAA U580700	박*준	810119-1*****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길 ***, *동 ****호(신당동, **아파트)
2	등록	45두15**	KNMC4C2HM BP084126	박*근	560901-1*****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2가길 **(신당동)
3	등록	05도19**	WDDZF0EB8H A028432	위*인	901104-1*****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0길 **, ***호(신당동, 부림빌라)
4	등록	68서75**	KMHNT81WP7 U027445	강*기	560629-1*****	서울특별시 중구 총무로 **(총무로3가)
5	등록	18부80**	KNAPH81BDG A218559	J*N J*N	900518-5*****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3라길 **-*3, 1층(신당동)
6	등록	서울80너79**	KN3HAP731YK 013322	류*선	620408-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0길 **-(신당동)